

定款

1971年 10月 27日 制定

1981年 3月 27日 改定

第1章 総則

第1條 (名称) 本協会は社団法人韓国国立公園協会라고 한다.

第2條 (事務所) 本協会は本部を 서울特別市에 두고必要에 따라支部 또는 出張所를設置할 수 있다.

第3條 (目的) 本協会는 우리 나라의 国立公園, 市・道・郡立公園, 自然公園, 觀光地 등 秀麗한 自然景觀地域의健全한 發展을 図謀하여 国民保健의增進과 精神生活의 醇化에 寄与함과 아울러 사랑스러운 國土의 自然美를 保全하여 우리의 後孫들에게 繼承할 것을 目的으로 한다.

第4條 (事業) 本協会는 그目的을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事業을 한다.

1. 国立公園의 概念과 指定趣旨의 普及에 関한 事業
2. 国立公園의 理想의in 開發과 運營을 위한 調查研究
3. 国立公園地域內의 学術的 價値가 있는 資源에 对한 調査研究
4. 国立公園의 觀光과 文化的 利用에 对한 指導와 公園計画 및 設計
5. 公園管理厅의 依頼를 받는 公園施設 및 資源의 管理와 公園事業의 代行
6. 國際自然保存聯盟(IUCN) 및 外國 国立公園協會와의 交流
7. 기타 本協会目的達成에 必要한 事業 및 附帶事業一切

第2章 会員

第5條 (資格) 本協会는 다음 会員으로構成한다.

- (1) 一般会員: 本協会의 目的에 賛同하고 所定의 入会節次를 거친 者
- 2) 終身会員: 本協会의 目的에 賛同하고 会

費 20万 원以上을 一時に 納入하여 理事会의 審査를 거친 者

- (3) 特別会員: 本協会의 目的에 賛同하고 公園管理業務에 從事하는 者
- (4) 団体会員: 本協会의 目的에 賛同하여 所定의 入会節次를 거친 機関 또는 団體

第6條 (権利 및 義務) (1) 会員은 本協会의任員의 選挙權 및 被選挙權과 重要事項에 对한 議決權을 가지며 本協会活動으로 因한 恵澤을平等하게 받을 権利가 있다.

다만, 特別会員은 会費納付의 義務가 免除되고 任員의 選挙權 및 被選挙權을 갖지 아니한다.

(2) 会員은 本協会의 定款 및 決議事項을 遵守하고 会費를 納付할 義務가 있다.

第7條 (資格喪失) (1) 会員은 脱退, 除名, 死亡의境遇 그 資格을喪失한다.

(2) 会員이 2年以上 会費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脱退한 것으로 본다.

第8條 (既納金処理) 会員이 脱退 또는 除名될境遇 既納한 入会金과 会費는返還하지 않는다.

第3章 任員

第9條 (定数) 本協会에 會長 1人, 副会長 2人을 包含하여 理事 7人以上 15人以下와 監事 1人을 둔다.

第10條 (選任) 本協会의 任員은 定期總會에서 会員中에서 選任한다. 다만 最初의 任員은 発起人總會에서 選任한다.

第11條 (任期) (1) 会長, 副会長 및 理事의 任期는 3年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있다.

(2) 任員의 欠員은 理事会가 補選하고 다음 總會에서 承認을 받는다. 이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残任期間으로 한다.

第12條 (職務) (1) 理事는 理事会를構成하며 本

◆ 協会案内 ◆

협회에 관한重要事項을 議決한다.

- (2) 会長은 本協회를 代表하며 会務를 統轄한다.
- (3) 会長 有故時에는 会長이 미리 定한 副會長이 그 職務를 代理하며 会長 欠員 時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 (4) 監事は 本協회의 會計와 業務를 監查한다.

第13條 (任員의 報酬) 任員은 名譽職으로 한다.

第14條 (顧問) (1) 会長은 理事会의 同意를 받아若干名의 顧問을 推戴할 수 있다.

- (2) 顧問은 会長의 諮問에 応한다.

第4章 会議

第15條 (会議) 本協회의 会議는 会員總會와 理事会의 2種으로 한다.

第16條 (会員總會)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의 2種으로 하고 定期總會는 每年 1月中에 이를 召集하며 臨時總會는 다음의 境遇에 召集한다.

1. 会員 3分의 1以上의 召集理由와 附議事項을 提示하여 要求할 때
2. 理事会의 決議로서 要求할 때
3. 会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第17條 (總會의 議決事項) 總會의 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

1. 定款의 變更과 解散 및 이에 関聯된 事項
2. 任員選出
3. 予算 및 決算에 대한 承認
4. 事業計劃 및 事業報告의 承認
5. 会員의 年会費 및 納付 回数
6. 기타 会長이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重要事項

第18條 (理事會의 議決事項) 理事會의 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

1. 諸規程의 制定 및 改定
2. 会員의 加入, 脱退 및 懲戒에 関한 事項
3. 予算編成과 運用
4. 重要事業計劃樹立과 執行
5. 總會附議事項의 審議
6. 기타 總會의 委任 또는 会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重要事項

第19條 (召集) (1) 總會 및 理事會는 会長이 이를 召集한다.

(2) 總會의 召集은 그 日時·場所 및 討議事項을 明示하여 開會 10日前까지 各 會員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緊急할 때는 예외로 한다.

(3) 理事會는 会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在籍理事 3分의 1以上이 召集을 要求할 때 이를 召集한다.

第20條 (議長) 總會 및 理事會의 議長은 会長이 되며 会長 有故時에는 会長이 미리 指名한 副會長이 이를 代行한다.

第21條 (議決權) 總會에 있어서 会員의 議決權은 平等하다.

第22條 (議事定足數) 總會와 理事會는 議決權의 過半數가 參席하여야 開會할 수 있다. 다만 總會의 境遇 定款의 改定, 解散에 関한 議決에는 3分의 2以上이 參席하여야 한다.

第23條 (議決定足數) 總會와 理事會의 議決은 參席者의 過半數로 한다.

第24條 (書面議決) 議長은 緊急을 要하거나 그 밖의 必要한 境遇에 總會의 承認을 받아 總會와 理事會의 議決을 書面으로 할 수 있다.

第25條 (議事錄) 總會와 理事會는 議事錄을 作成하여 議長 및 參席任員이 署名捺印하고 會議開催한 날로부터 2週日内에 議事錄 写本添付하여 建設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5章 專門委員会와 事務局

第26條 (專門委員会의 設置) (1) 本協회의 事業遂行上 必要할 때 会長은 理事會의 承認을 받아 專門委員会를 設置할 수 있다.

(2) 專門委員会의 機構와 運營에 関한 事項은 따로 定한다.

第27條 (事務局設置) (1) 本協회에 事務局을 두고 事務局長 1人과 職員若干名을 둘 수 있다.

(2) 事務局長과 職員은 会長이 任免한다.

(3) 事務局의 構成 및 運營에 関한 事項은 따로 定한다.

第6章 財產 및 会計

第28條 (財産) 本協会의 財產은 다음과 같다.

1. 設立當時의 喜捨金
2. 人会金과 会費 및 寄附金, 助成金, 補助金 등 贊助金
3. 所有物
4. 本協会 事業으로 發生한 収入
5. 기타 諸収入

第29條 (基本財產) 다음의 財產을 本協会의 基本財產으로 한다.

1. 所有物
2. 基本財產으로 指定한 贊助金
3. 기타 理事会가 基本財產으로 決議한 財產

第30條 (経費) 本協会의 経費는 会費, 贊助金과 本協会 事業으로부터 發生한 収益 및 기타 収入金으로 充當한다.

第31條 (会計年度) 本協会의 事業 및 会計年度는 每年 1月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第7章 解 散

第32條 (解散) (1) 本協会는 会員 3分之 2以上의 同意와 主務官廳의 許可를 받지 않고는 解散하지 못한다.

(2) 本協会가 解散된 境遇에는 總會員 過半數의 同意를 얻어 本協会의 모든 財產을 主務官廳의 承認下에 本協会와 目的이 類似한 法人体에 讓渡하거나 또는 같은 目的을 위해 處分한다.

第8章 附 則

第33條 (定款改定) 本協会의 定款改定은 總會의 議決을 거친 다음 主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서 한다.

第34條 (細則制定) 이 定款의 施行에 必要한 細則은 理事会의 承認을 받아 会長이 定한다.

第35條 (発効) 本定款은 主務部長官의 法人設立許可를 받아 設立 登記를 마친 날로부터 効力을 發生한다. 끝.

短 信

公園施設物図集(公共施設物編)完成

國立公園을 비롯한 自然公園內部施設物이 自然景觀에 調和되지 못하거나, 週邊環境에 어울리지 못하는 色感 등 많은 問題點을 드러내고 있음을 考慮하여 建設部는 우선 公共施設物에 대한 図面集을 發刊하였다.

韓國國立公園協會에 委嘱하여 만든 이 図集은 標識板 · 案內板 · 簡易公衆便所 · 벤취 · 파고라 · 飲水台 · 照明燈 등 17個部門에 걸쳐 山岳型 · 丘陵型 · 海岸型 · 都市型 등 立地特性에 따라 標準을 달리하고 平面 · 立面 · 斷面과 함께 色相 · 材料 · 規格 등이 明示되어 있으며 簡略한 說明과 設置上의 留意事項이 記錄되어 있다. 120그램 아트지 음세트인쇄인 이 図集은 호화로움보다 實務的인 利用에 便利하도록 製作되어 各市 · 道에 配付됐다. 이 作業을 受託했던 韓國國立公園協會는 이 図集의 實際利用面에서 問題点, 險路事項 등이 나타나면 이를 补完하여 다른 部門의 施設物과 함께 自體의인 公園施設物 図集을 發刊할 計劃으로 資料등을 蒐集하고 있다.